

○○○씨 족보편수위원회 규약

제 1 장: 총 칙

第一條: 본회는 ○○○氏○○○派 族譜編修委員會라 칭한다.

第二條: 본회의 事務所는 서울에 둔다.

第三條: 1. 본회는 族譜를 編修發刊하여 보계(譜系)를 명확히 하고 선조의 업적을 기리며 일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아울러 ○○○派宗會의 發展基金을 조성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2. 派宗會 發展基金은 會館마련, 爲先事業, 獎學事業 등에 쓴다.

제 2 장: 임 원

第四條: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과 편수위원을 둔다.

1. 任 員

- | | |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① 顧問若干人 | ② 會長一人 | ③ 副會長若干人 |
| ④ 幹事一人 | ⑤ 財務一人 | ⑥ 監事二人 |

2. 編修委員

-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① 收單委員若干人 | ② 校正委員若干人 | ③ 書記若干人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
第五條: 任員은 ○○○氏○○○派 宗회의 임원회에서 選任하고 편수위원(編修委員)은 회장이 추대한다.

第六條: 임원 및 편수위원의 임기는 족보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.

第七條: 임원과 편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會長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때에는 그 의장이 된다.
2. 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며 會長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.
3. 幹事는 會長의 지휘를 받아 모든 會務를 처리한다.
4. 財務는 재정의 실무를 맡으며 그 책임을 진다.
5. 監事는 본회의 일반사무 및 모든 재정을 監査한다.
6. 收單委員은 맡은 지역의 收單任務를 수행하며, 收單費를 받고, 영수증을 발급한다.
7. 校正委員 및 書記는 會長의 지휘에 따라 맡은 사무를 처리한다.
8. 顧問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제 3 장: 재 정

第八條: 본회의 財政은 誠金 및 收單費와 譜冊代의 수입금으로 充當한다. 단 부족할 때는 會長이 주선하기로 하고 그 금액은 족보가 끝나기 전에 갚기로 한다.

第九條: 본회의 財政은 會長名義로 銀行에 예치하여야 한다.

第十條: 會務로 인한 人件費, 出張費 등은 實費로 支給할 수 있다.

제 4 장: 회 의

第十一條: 본회의 회의는 편수위원회, 임원회 및 실무회의를 두며 성원은 참석인원으로

